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	
		배포일시	2021. 1. 30(토) / 총 1 매(본문1)	
담당 부서	주택건설공급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경헌, 사무관 김준, 주무관 진해룡 • ☎ (044) 201-3366, 3367	
	주택정책과		• 과장 장우철, 사무관 최두석 • ☎ (044) 201-3333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충간소음 저감을 위한 추가 건축비, 분양가상한제에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.

- < 보도내용('21.1.29, 매일경제) >
 - ◈ 신기술 적용한 기둥식 아파트 기존 벽식보다 소음 확 줄어
 - ◈ 건축비용 많이 드는게 단점, 결국 분양가 탄력 적용이 해법
- □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도 무량판, 라멘 등 구조 형식에 따라 3~16%, 주택성능등급의 경량·중량충격음 등 충간소음 성능수준에 따라 1~4% 가산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, 관련 건축비용은 이미 분양가에 탄력적용이 가능합니다.
 - ※ 지상층·지하층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율

지	상층의 구조형식	지하층의 구조형식		
철근콘크리트 무량판구조	벽식 혼합 무량판구조	3%	_	-
구당원구조 	완전 무량판구조	5%	_	_
철근콘크리	비트 라멘구조	5%	_	_
철골철근	콘크리트구조	10%	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	4.8%
철	골구조	16%	철골구조	4.8%

○ 또한, 국토교통부는 **충간소음 저감**을 위해 아파트 **시공 이후 바 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**하는 '**사후 확인제도**' 도입('22.7.)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준 사무관(044-201-336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